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60호 2014. 9. 30.(화)

훈 령

○ 사천시 훈령 제286호 사천시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처리규정 폐지규정 ----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60호(2)

훈 령

사천시 훈령 제286호

사천시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처리 규정 폐지규정을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4년 9월 30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처리 규정
폐지규정

사천시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처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